

## 석유 지하 탱크 법규 Chapter 173-360 WAC

2012년 8월 8일, 주 환경부는 주법 Chapter 173-360 WAC 에 의거 석유 지하 탱크 규제법을 절차에 따라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법은 9월 5일 발표되며, 10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 Chapter 173-360 WAC 란 무엇인가?

법규 173-360 장은 유류 혹은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지하저장 탱크를 관리하는 법규이며, 본 개정은 다음사항을 위한것이다:

1. 와싱턴주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 하고 이에따른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함을 막기위하여 유류 누출 사고수와 누출정도를 극소화 함이다.
2. 관련 연방정부 법규를 준수하므로 지하탱크 운영기금을 계속 유치하기위한 일환이다.

### 2012 년 8 월 8 일 에 채택된 개정법규 요약

개정 Chapter 173-360 WAC 은 다음과 같다:

1. 석유지하탱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있지 않는 업소에 유류 공급 중단 행정 명령을 할수있는 권한을 주환경부에게 부여함.
2. 석유지하탱크를 소유 혹은 관리자가 이수하여야할 교육훈련 과정을 설치함. 현 관리자는 2012 년 12월 31일 까지 교육 훈련을 마쳐야 함.
3. 2012년 10월 1일 이후로 탱크와 배관을 신설혹은 개수시에는 이중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함.
4. 2012년 10월 1일 이후로 주유기, 혹은 관련 배관을 신설혹은 개수시에는 반드시 주유기 아래에 누출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함.

#### 법규 개정 사유

석유 지하탱크 법규는 석유혹은 유해물을 함유한 지하탱크가 누출사고시 야기될수있는 지하식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침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와싱턴 주전체에 약

3,600 개의 취급업소가 있으며, 총 9,500 여개의 지하탱크가 이법규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 여건의 신규누출 사고가 확인 보고되고있습니다

개정법안의 목적은 신규 누출 사고수를 줄이고, 큰유출 사고가 발생하지않게 함에 있습니다.

#### 주요일정:

이중 보호장치와 주유기 아래 누출 방지장치 설치 의무일: 2012 년 12 월 31 일 이후 설치시

탱크 관리인 교육마감일: 2012 년 12 월 31 일

#### 담당자 연락처:

Joe Hickey  
360-407-7382  
[joe.hickey@ecy.wa.gov](mailto:joe.hickey@ecy.wa.gov)

#### 장애자를 위한 도움:

시각 장애자는 360-407-7170 (Toxics Cleanup Program) 로 전화 문의 할것

청각 장애자는 711 로연락 하여 Washington Relay Service 의 도움을 받으시고, 언어 장애자는 877-833-6341 로 문의 바람.

##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공식입장

공청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주환경부의 공식입장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웹을 통해 열람 가능함. [www.ecy.wa.gov/1209049.html](http://www.ecy.wa.gov/1209049.html)

## 개정법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번 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관련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 지하탱크를 소유 혹은 운영하는자.
- 지하탱크를 소유 혹은 운영하는자에게 탱크 수리 관련 영업행위를 하는자.
- 유류를 공급하거나 폐류를 수거하는자.
- 지하탱크를 운영하는자를 교육 훈련하는자.

## 상세 사항

- 지하탱크 개정법규 상세사항은 아래 참조:  
[www.ecy.wa.gov/programs/tcp/regs/ust/2012/rule-making.html](http://www.ecy.wa.gov/programs/tcp/regs/ust/2012/rule-making.html).
- 지하탱크 일반 법규 상세사항은 아래 참조  
[www.ecy.wa.gov/programs/tcp/ust-lust/tanks.html](http://www.ecy.wa.gov/programs/tcp/ust-lust/tanks.html).
- 차후로 변경법규에 관한 소식을 직접 받고 싶을때는 아래 참조:  
[listserv.wa.gov/cgi-bin/wa?A0=ECOLOGY-UST-RULE](mailto:listserv.wa.gov/cgi-bin/wa?A0=ECOLOGY-UST-RULE).
- 차후로 주환경부 전체의 법규 개정사항에 관한 소식을 받기 원할때는 아래 참조:  
[listserv.wa.gov/cgi-bin/wa?A0=ECOLOGY-WAC-TRACK](mailto:listserv.wa.gov/cgi-bin/wa?A0=ECOLOGY-WAC-TRACK).

## 항소 절차

주헌법 (RCW 34.05.330) 에 의거 본 개정에 관한 적절한 항소 절차를 거쳐 항소할수있다. 항소절차를 알기 원하는이는 Bari Schreiner에 게 문의 바람 (Agency Rules Coordinator, at 360-407-6998 혹은 [bari.schreiner@ecy.wa.gov](mailto:bari.schreiner@ecy.wa.gov).)